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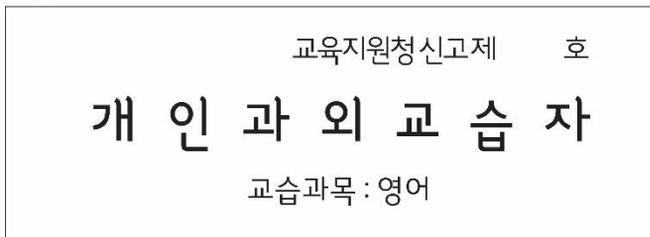
## ['과외교습자'표지부착에 대한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시 주거지 출입문 또는 외부에 교습과목 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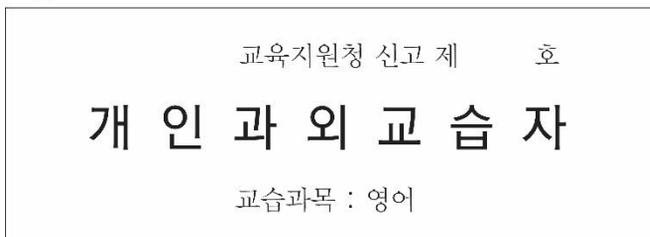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 1. 예시

type\_1



type\_2



#### 2. 표지작성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 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것이여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를, 표지의 정중앙에 개인과외 교습자 표시를, 표지의 하단 중앙에 교습과목을 각각 적는다.

. 글자체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와 교습과목의 글자크기의 비율은 13:24:13으로 한다.

여러분이 쉽게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규격에 맞는 첨부파일로 [teach.jebs.kr](http://teach.jebs.kr)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시해드린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되며, 위 작성요령에 맞게 직접 출력 또는 현판으로 제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